

한일 무역마찰에 관한 한국의 대안 모색*

-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와 CPTPP 간 양면성 분석을 중심으로 -

송정현**
arkenciel@gmail.com

<目次>

- | | |
|--------------------------------------|---------------------------|
| 1. 서론 | 2.3 수출 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배제의 근거 |
| 2. 본론 | 2.4.CPTPP 현황과 주요 내용 |
| 2.1 선행연구 | 3. 결론 및 정책적 대안 |
| 2.2 반도체소재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제외 관련 배경과 추이 | |

主題語: 무역마찰(Trade friction), 수출규제(Export restrictions), 환태평양 파트너십에 관한 포괄적 및 선진적 협정(CPTPP), 화이트리스트(White list), 반도체산업(Semiconductor industry)

1. 서론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일본의 한국 반도체소재 수출규제에 이어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한일 정치는 물론 경제협력·무역통상 관계에 큰 파장을 미치고 있다. 일본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고 있는 품목은 반도체 관련 소재 중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에 의존도가 높았던 소재이다. 일본정부는 2019년 7월 4일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 3개 소재에 대한 한국수출을 전면적으로 규제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또한 8월부터는 27개 국가에 지정 하던 ‘화이트국가(백색국가)’ 제도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하였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반도체소재를 포함한 제조업 재화의 공급망(서플라이 체인) 붕괴가 현실화되면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산업의 제조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커진다. 또한 이러한 일방적인 경제적 수출규제 조치는 향후 한국경제의 침체는 물론 세계자유무역의 기본 이념조차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다. 반면 2019년 6월 28에서 29일에는

* 본 연구는 2019.8.23. 한국일본학회 제99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와 CPTPP의 양면성에 관하여” 연구를 바탕으로 개선된 연구논문임을 밝힌다.

** 동국대학교 일본학과 조교수

일본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G20 정상회의에서 일본정부는 자유무역과 국제분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일본이 세계 자유무역의 리더로서 세계경제의 주역을 자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렇게 G20에서는 자유무역을 주장하던 일본정부가 불과 며칠 후에 한국에의 수출규제를 시행한 모순적 행태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한편, 일본은 2018년부터 발효된 CPTPP¹⁾(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環太平洋パートナーシップに関する包括的及び先進的な協定, 환태평양 파트너십에 관한 포괄적 및 선진적 협정)를 주도적으로 체결 및 시행하고 있다. CPTPP는 자유·민주주의·기본적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함께 향후 세계무역 및 투자 규칙의 새로운 기준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 간 분업과 자유무역에 근거한 역내무역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는 CPTPP의 조약 내용은 한국 수출규제의 내용 및 배경과 모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주도하려고 하는 CPTPP에서의 일본정부와, 국가 및 국제적 안보를 문제삼아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를 배제하는 일본정부 간의 양면성에 관하여 주의 깊게 고찰한 이후 한국 측면에서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우선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의 경위와 배경을 파악함과 동시에 이러한 수출규제의 문제점에 관해서 국제적 협약에 근거하여 논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CPTPP의 설립 배경과 경위, 그리고 목표를 명확히 고찰한 후, 한국에의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배제 행위와 CPTPP에서의 원리원칙 간 양면성에 관하여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측면에서의 향후 일본에의 정치외교적 및 경제적 대책방안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2. 본론

2.1 선행연구

FTA 및 TPP에 관한 다양한 선행연구 중, 제현정(2015)은 한국이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대일수입의존도가 높기에 FTA를 통한 시장개방시 신중한 접근과 전략이 요구됨을 주장하였다. 임천석(2003)은 한일 FTA 체결시 한국의 대일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한국측의

1) 현재 일본정부에서는 CPTPP용어보다는 가맹국이 11국가인 점에서 비롯된 TPP11 용어를 보다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적으로 보다 일반적인 CPTPP를 기본적으로 사용한다. 보다 자세한 용어 경위는 <표2>를 참조할 것.

대응방안에 관하여 제안하였다. 김기홍(2005)에서는 FTA를 경제적 관점과 함께 내부협상이라는 관점에서 한일 FTA를 주도면밀하게 논의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TPP에 관련해서 石川(2012)에서는 TPP는 과거의 EPA보다 개방도 수준이 높기에 농업 자유화에 따른 일본의 대비가 필요함을 논하였다. 양광수, 김도훈(2018)은 TPP11를 통하여 일본은 동아시아와 환태평양 연안지역을 연계하는 키맨(Key-Man) 역할로 자유무역체제를 주도하고자 하는 전략을 시행 중임을 설명하였다. 日本經濟新聞 기사(2019.6.21)에서는 미중 무역분쟁의 해결과 미국의 TPP가입 복귀를 위한 방안으로 TPP11의 적극적인 활용과 논의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WTO체제를 통하여 오랜 기간 세계무역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는 오늘날에 세계 각국 간 분업과 자유무역체제의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 전체의 헤게모니로 자리잡고 있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자유무역 체제 내에서 국가들은 인접지역 내 국가 간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북아메리카의 NAFTA, 유럽의 EU, 동남아시아의 ASEAN, 그리고 TPP 또한 국가 간 자유무역 협력체제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일본은 서로 무역의존도가 높은 관계를 오랜 기간 유지하고 있기에, 한일 FTA 및 무역관계 개선에 있어서 긴밀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2.2 반도체소재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제외 관련 배경과 추이

2019년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대한민국 수출관리운용의 재검토(大韓民国向け輸出管理の運用の見直しについて)’에서 한일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손상되었으며 대한민국 수출통제에 관하여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기에 수출관리 제도를 재검토한다고 발표했다.²⁾ 구체적으로는 한국을 화이트국가 리스트에서 삭제하는 시행령 개정절차를 시작함과 동시에 7월 4일부터 포토레지스트(감광액),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의 한국 수출을 포괄수출허가제도 대상에서 제외하여 개별수출 허가신청을 실시하는 내용이다.

한국무역협회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관련 통계 보고서³⁾’에 따르면 앞으로 3개 품목에 대해서는 계약건별로 수출 허가를 받아야하며 이로 인해 허가 신청과 심사까지 90일 가량

2) 일본정부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한일 신뢰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는가에 관한 정확한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3) 한국무역협회 보도자료(2019.7.2.)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관련 통계”

소요될 전망이다.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반도체 3대 소재의 일본 의존도는 레지스트가 91.9%, 에칭가스가 43.9%, 플로오린 폴리이미드는 93.7%로 나타났다. 이들 소재는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소재임과 동시에 일본에의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이다. 문제는 수출 허가를 신청해도 수출이 불허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점이며, 이러한 조치는 한국 수입업체에게는 심각한 불확실성으로 다가올 것이 자명하다.

이에 한국정부는 즉각적으로 대응을 시작하였다. 청와대는 7월 4일 국가안보실장을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취한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는 WTO(국제무역기구)의 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경제보복”이라며 “일본이 이러한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것”으로 향후 대응방안에 관하여 밝혔다⁴⁾.

양 국가 간의 의견대립과 비난이 첨예하게 격화되는 가운데, 7월 12일과 13일에는 한일 수출규제 관련 비공개 실무회의가 실시되었고 이후 8월 1일에는 한국의 강경과 외교부장관과 일본의 고노다로 외무상 간 양자회담이 성사되었으나, 두 번의 회담은 아무런 성과 없이 막을 내렸다. 비공개 실무회의 및 양자회담을 통한 협의는 한국 측에서 요청하여 시행되었으나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자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의 합의 의사가 보이지 않을 경우 WTO에 제소하는 방침을 표명하였다. 양자회담 직후인 8월 2일에는 일본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제외 법령’ 개정안을 각의 결정했으며 이후 8월 7일에는 시행령을 공포하였다. 이 시행령으로 인하여 일본에 수출을 할 때 허가 취득절차를 면제해주는 화이트리스트국가에서 한국이 배제되면 수입절차가 강화되어서 통상 90일, 제품에 따라서는 그 이상도 소요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변모했다. 이에 한국정부는 8월 12일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 제외’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한일이 서로 상대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결과에 이르렀다. 이후 9월 11일에는 한국 측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하여 WTO에 제소를 신청하며 양자협의를 요청서를 발송하였다. 16일에는 한국의 일본 수출규제 제소 사항이 회원국들에게 회람되면서 본격적인 국제소송 건으로 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표1>은 2019년 7월 1일부터 본격화된 한일 수출규제와 관련하여 주요 사항들을 정리한 표이다.

4) 2019.7.4.YTN기사 “NSC상임위 “日 수출규제는 보복적 성격…명백한 국제법 위반”

<https://www.yna.co.kr/view/AKR20190704147353001>

<표1> 한일 수출규제 주요 추이

일시	주요 내용
2019년 7월1일	일본 경제산업성 ‘대한민국 수출관리운용의 재검토에 대해’ 발표
2019년 7월4일	반도체 3개 소재 한국수출 규제 발표
2019년 7월12일~13일	한일 수출규제 논의 비공개 실무회의 실시
2019년 8월1일	한국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일본 고노다로 외무상 양자회담
2019년 8월2일	일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제외 법령’ 개정안을 각의결정
2019년 8월7일	일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제외’ 시행령 공포
2019년 8월12일	한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 제외’ 수출입고시 개정안 발표
2019년 8월28일	일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제외’ 시행
2019년 9월11일	한국 일본의 수출규제에 WTO 제소, 양자협의 요청서 발송
2019년 9월16일	한국의 일본 제소에 관련하여 WTO 회원국들에게 회람

출처: 한일 정부기관 발표자료 및 관련 사이트 등을 토대로 필자 작성

2.3 수출 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배제의 근거

일본정부는 한국에의 수출규제가 과거 징용공 배상문제나 위안부 판결 등과는 관련성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이는 정치적 문제를 이유로 타국에의 수출을 규제할 경우 WTO제소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점을 의식한 이유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떠한 이유로 일본은 한국에의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인가?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자료에 근거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2019년 8월 2일에 발표한 ‘輸出貿易管理令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が閣議決定 政令案・理由’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国際的な平和及び安全の維持のため、大韓民国を仕向地とする貨物の輸出について仮に陸揚げした貨物に係る輸出の許可の特例を廃止する等の必要があるからである⁵⁾。

(번역: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하여 대한민국을 목적지로 하는 화물의 수출에 대해 수출 허가의 특례를 폐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

일본정부는 한국 수출규제의 가장 큰 이유로 국제평화와 안보를 거론하고 있다. 이는 안보,

5) 経済産業省(2019.8.2.)輸出貿易管理令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が閣議決定 政令案・理由
(<https://www.meti.go.jp/press/2019/08/20190802001/20190802001.html>)

테러, 군사적 이유를 제외하고는 보통국가가 수출을 금지할 명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즉 일본정부는 WTO에서 인정받고 있는 안보를 위한 수출운용관리제도의 적절한 운용에 위배되지 않기에 한국에의 수출규제가 타당하다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수출규제 시행 이후인 7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WTO의 규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지속적으로 주장을 반복한 일본정부의 입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⁶⁾. 또한 이러한 일본정부의 안보 위협을 이유로 수출규제를 시행하는 명확한 근거자료 또한 제대로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도 향후 WTO제소 등에서 일본측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적 안보 위협을 근거로 한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는 화이트리스트 배제의 근거에서도 동일하게 주장되고 있다. 경제산업성이 2019년 8월 2일에 발표한 “수출무역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 각의결정⁷⁾”에서 발표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즉 포괄규제 근거와 원칙 내용에서도 파악할 수 있다.

これらの改正により、大韓民国向けの輸出については一般包括許可が適用できなくなるとともに、キャッチオール規制の対象となります。

...キャッチオール規制: リスト規制品以外であっても、大量破壊兵器等や通常兵器の開発等に用いられるおそれがある場合に輸出許可申請が必要となります⁸⁾。

(개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에 대해서는 일반적 포괄적 권한을 적용 할 수 없게되는 동시에 포괄규제(캐치 올 규제)의 대상.

...캐치 올 규제: 목록규제품 이외에도 대량 살상 무기 등과 재래식 무기 개발 등에 이용되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 수출 허가 신청이 필요.)

이처럼 포괄규제(캐치 올 규제)의 대상으로 한국이 편입되는 이유에도 ‘대량 살상 무기 등과 재래식 무기 개발 등에 이용되는 우려가 있는 경우’로 일본정부는 설명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2.4 CPTPP 현황과 주요 내용

일본정부는 한국에의 수출규제를 시행하는 한편, CPTPP를 통한 다자간 경제통상협정을

6) 연합뉴스 기사 (2019.7.11.) “日 정부 ”수출규제, WTO 위반 아냐…안보 이유” 주장 반복” (<https://www.yna.co.kr/view/AKR20190711088300073>)

7) 経済産業省 (2019.8.2.) 輸出貿易管理令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の概要

8) 経済産業省 (2019.8.2.) 輸出貿易管理令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が閣議決定されました (<https://www.meti.go.jp/press/2019/08/20190802001/20190802001.html>)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006년에 싱가포르, 브루나이, 칠레, 뉴질랜드의 4개 국가가 EPA에 관하여 체결하던 도중, 미국 및 일본을 포함한 8개 국가가 추가 가입협상에 뛰어들면서 관세가 커지던 TPP는 이후 트럼프정권이 들어서면서 미국이 TPP에서 탈퇴함에 따라 11개 국가 간 협정으로 이행되었다.⁹⁾ 2017년 11월에 국가 간 대략적 합의가 시행된 이후 2018년 3월에 서명식을 가졌으며 그해 12월부터 일본을 포함한 8개 국가에서 CPTPP가 발표되었다. 표2. 는 TPP 체결 및 발효까지의 경위와 주요 내용, 그리고 사용되어진 용어의 변천과정을 정리한 표이다.

<표2> TPP체결 및 사용용어 경위

일시	주요 내용	사용용어
2006년	싱가포르, 브루나이, 칠레, 뉴질랜드 4개국 EPA체결	P4
2009년	미국 (오바마 정권) 및 8개국가 가입 협상	P4+8
2010년 3월	TPP협정교섭 개시	TPP
2013년 7월	TPP협상에 일본 참가	TPP
2017년 1월	미국 트럼프대통령 TPP이탈 대통령 각서서명	TPP
2017년 3월	TPP각료회합	TPP
2017년 5월	TPP협정의 조기발효를 위한 선택사항을 11월 APEC회의까지 검토	TPP
2017년 7월-11월	TPP고위 관리 회의	CPTPP
2017년 11월	TPP각료회의: 대략적 합의	CPTPP (TPP11)
2018년 1월	TPP고위 관리 회의에서 협정 본문 및 동결항목을 확정	CPTPP (TPP11)
2018년 3월	서명식	CPTPP (TPP11)
2018년 12월	8개국에서 TPP 발효 (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CPTPP (TPP11)

출처: 内閣官房 TPP政府対策本部(<http://www.cas.go.jp/jp/tpp/tpp11/index.html>) 및 관련 사이트 등을 토대로 필자 작성

미국이 이탈한 이후 CPTPP를 주도하는 입장을 견지해 온 일본은 용어를 TPP에서 CPTPP로 변경하면서 CPTPP가 세계 자유무역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CPTPP

9) 미국이 TPP에서 이탈한 이후 일본 및 참여국가들은 이전의 TPP와 용어적 차별화를 두기 위하여 CPTPP를 제안하기 시작하였다.

의 새로운 주요 협정분야로는 투자, 무역원활화, 전자상거래, 국유기업, 지적재산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투자기업에 기술이전 등 요구 금지, 급송화물의 신속한 세관수속, 전자상거래의 국가 간 자유로운 유통, 국유기업 악영향 제재, 지적재산권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무역원활화 분야에서는 국가 간 분업과 자유무역에 근거한 역내무역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한국 수출규제의 내용 및 배경과 모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가 간 분업과 자유무역을 CPTPP에서 강조하는 일본정부가, 한국에 대해서는 모순된 방향으로 수출규제를 하고 있는 양면성을 향후 국제사회에 공론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표3> CPTPP의 분야별 주요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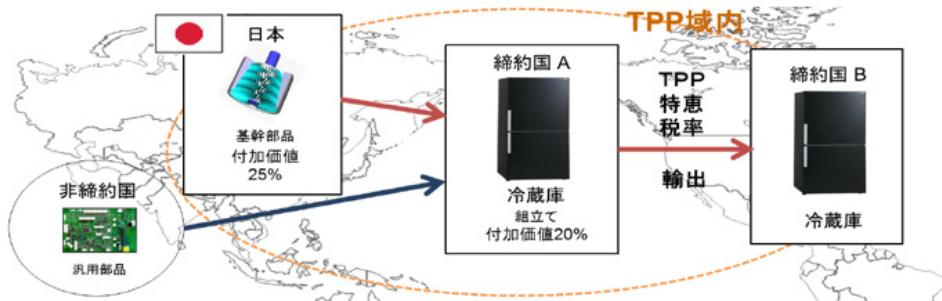
분야	주요 내용
투자	투자대상 국가가 투자기업에 기술이전 등 요구 금지
무역원활화	급송화물의 신속한 세관수속(6시간 이내 인수) 명기
전자상거래	국가 간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확보, 소스코드 이전 액세스 요구 금지, 서버 현지화 요구 금지
국유기업	비상업적 구호로 다른 당사국들의 이익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 금지
지적재산	모방위조품 등에 대한 엄격한 규정 마련

출처: 内閣官房 TPP政府対策本部(<http://www.cas.go.jp/jp/tpp/tpp11/index.html>) 내용을 토대로 필자 작성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시행과 가장 양면성을 지니는 부분은 일본정부에서 주장하는 일본의 CPTPP의 경제적 및 전략적 의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본정부는 CPTPP가 관세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자유화를 추진하며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환경보호 등 폭 넓은 분야에서 21세기에 적합한 새로운 규칙을 아시아 태평양에 자유롭고 공정한 세계시장을 구축하는 것을 경제적 의의로 삼고 있다. 또한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법률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함께 향후 세계무역·투자규칙의 새로운 표준을 제공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관계 강화와 동시에 지역의 성장·번영·안정에 이바지하는 점을 전략적 의의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법률 측면에서 동일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한국과의 무역수출을 규제하고 있는 일본정부의 정책과 정면으로 모순되고 있다.

CPTPP는 원산지규칙의 기준도 강화하고 있다. TPP 역내에서 완전히 생산된 상품, 혹은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상품 중 품목별 원산지 규정(PSR : Product-Specific Rules of Origin)을 만족한 상품만이 역내 원산지 상품에 해당된다¹⁰⁾. 원산지 규정은 역외국에서

생산된 상품이 부당하게 특혜관세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CPTPP에서의 원산지규칙은 철저히 국가 간 분업과 국제적 생산공급망을 전제로 한 규칙이라는 점이다. CPTPP의 원산지규칙과 한국에의 수출규제는 이처럼 자유무역주의체제 하에서 명백한 모순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누적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국A의 부가가치가 20%이기 때문에 원산지규칙(부가가치 기준45%)을 채울 수 없지만, 누적제도가 있다면 일본의 부가가치25%+체결국A의 부가가치 20%를 더해 부가가치 45% 기준을 만족하기에 역내생산제품으로 인정됨.

출처: 経済産業省 (2018) 日EU・EPA, TPP11の概要と海外展開支援について

<그림1> CPTPP의 원산지규칙 기준 예시

일본정부가 CPTPP를 시행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국내산업 지원정책에도 주목해야 한다. 일본은 CPTPP를 시행하는 동시에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TPP에 의한 교역·투자 확대를 국내 경제 활성화에 직결시키는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기술 이노베이션을 실현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대내투자 활성화 촉진, TPP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국내 지역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및 브랜드화 추진,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견·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도모 등을 주요 경쟁력 강화정책으로 전개하고 있다.

10) 역내 원산지규칙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 기준으로 역내생산비율 55% 이상, 부품 조립의 경우 품목에 따라서 역내원산비율 45%~55%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3. 결론 및 정책적 대안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로 시작된 한일 무역마찰은 무역·소재의존도가 높은 양국의 반도체 생산공급망을 붕괴시키며 크나큰 정치경제적 마찰로 격화되고 있다. 한일 간 정치외교적 문제가 경제보복적인 성격을 지니며 세계 자유무역체제의 기본 이념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이행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반도체 소재 중 한국 기업이 대체하기 힘든 3가지 소재를 선정하여 수출규제를 실시하였다. 이는 한국 반도체산업 생산의 차질을 불러옴은 물론 여타 산업의 생산공급망에도 수출 규제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가져 온 점이 한국 산업경제 측면에서의 가장 큰 피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직접적인 소재 공급에 타격을 받은 한국 기업에게는 물론 향후 중장기적 측면에서는 일본에게도 피해가 가는 자충수가 될 가능성도 높다. 삼성, 하이닉스, LG 등의 회사는 일본에게 있어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높은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생산기업이다. 기습적인 반도체소재 수출규제는 한국 반도체 생산기업에게 일시적인 생산공정의 차질을 빚게 할 수 있으나, 향후 한국기업이 소재의 국산화, 수입노선의 다변화 등으로 일본에의 수입의존도 문제를 극복하고 난 후에는 일본의 소재수출 기업은 향후에도 중요한 소비자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한국의 반도체를 부품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본의 스마트폰, TV, 가전기기의 경우 한국 반도체의 가격 상승 또는 공급차질이 발생하게 되면 일본의 생산품도 가격이 상승하거나 공급이 감소할 수 있다.

또한 생산활동을 시행할 때 소재확보의 공급망이 붕괴되는 것은 기업에 있어서 가장 큰 불확실성이자 리스크로 작용하게 된다. 이후에 한일 간 관계가 개선되고 무역마찰 리스크가 해소된다 하더라도 한국의 기업 입장에서는 재발할 수 있는 일본기업에의 소재 수입을 재개할 이유가 없어진다. 이러한 견해는 일본측에서도 불안한 요소로 거론되고 있다. 일본상공회의소의 미무라 아키오(三村明夫)회장은 지난 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부품 및 소재의 자체 생산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했다¹¹⁾.

한국은 한일 국교가 정상화된 1965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모든 연도에 걸쳐 일본과의 무역수지 적자 관계를 이어 왔다. 54년의 긴 시간동안 대일 무역 및 소재 의존도에 크게 의존하면서 자립적인 생산공급망을 갖추지 못한 점은 반성과 함께 개선의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번 무역마찰을 계기로 대일 무역마찰의 향후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통상무역 경쟁

11) 경향신문기사 (2019.7.6.)“Q&A로 풀어보는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아예 수입을 못하는 건가요?”
<https://news.v.daum.net/v/20190706060104606>

력 강화를 실현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한국은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향후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네 가지 대응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 번째, 한국에의 수출규제와 CPTPP 간 모순성에 근거한 국제적 외교카드의 활용이다. 국가 간 분업과 자유무역을 CPTPP에서 강조하는 측면과 한국에의 수출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양면성을 WTO제소를 포함하여 향후 국제사회에 공론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에의 수출규제의 근거를 국제적 안보, 테러 및 대량 살상 무기 등과 재래식 무기 개발 등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일본정부측의 논리는 명확한 근거자료와 논증적 타당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 한국에의 수입품이 북한 등에게 유출되어 무기화되고 있지 않음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이러한 일본정부측의 논리에 부당함이 있음을 WTO제소는 물론 다양한 국제회의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반도체소재를 포함한 제조업 공급망의 국산화비율을 늘리는 방안이다. 현재 국내 반도체 업계의 소재 국산화율은 50%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공작기계 및 차세대연료 자동차산업의 소재 및 부품에서도 일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품의 핵심 소재 공급을 국산화하여 대일 의존도를 낮추어야 한다. 국가 간 외교마찰 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온 시점에서, 향후 자립적인 생산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양한 소재부품 기술개발 지원정책과 산관협력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세 번째, 원천기술 연구개발을 포함한 R&D의 적극적이고 중장기적인 시행이다. 특히 원천기술 연구개발은 짧은 기간 내에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중장기 플랜 하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기업R&D 지원과 강소기업 육성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원정책은 수출규제의 대상인 반도체 3대소재는 물론, 일본에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공작기계, 수소에너지자동차, 정밀화학 원료 등의 분야에서도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연구개발 지원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립적이고 기술원천적인 중소·중견기업의 지원 및 육성정책이 보다 필요하다. 현재 미국, 호주 및 일본 지자체에서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는 이코노믹 가드닝(Economic Gardening)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코노믹 가드닝은 지역 중소기업 중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한 후 집중 육성 정책을 시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이다. 지역 내에 존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하여 자생적인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이코노믹 가드닝은 가시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지역경제 정책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역기업을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이코노믹 가드닝은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자주적인 지역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정책이다²⁾. 이코노믹 가드닝은 한정된 재정자원을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

인 지원 시행이 가능한 정책이며 한국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도입할 수 있는 정책으로 판단되기에 적극적인 도입 검토와 함께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역통상 협력체제의 다각화 추진이다. 한일 무역마찰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미중 무역마찰로 여파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CPTPP가 일본이 주도하는 다자간 경제협력체제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정 국가와의 무역·소재 의존도를 줄여 나감과 동시에 다수 국가와의 경제 협력체제를 추진하여 정치외교적 리스크를 최소화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参考文献】

- 김기홍(2005)「내부협상의 관점에서 본 한일 FTA 논의 분석」『한일경상논집』32, pp.29-55
- 제현정(2015)「한일 무역의 특징과 한일 FTA에 대한 시사점」『IIT Trade Focus』Vol.41
- 송정현(2016)「이코노믹 가드닝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미국 및 일본 오사카부(大阪府)를 대상으로 한 사례 연구」『동북아경제연구』22(2), pp.1-26
- 양광수·김도훈(2018)「東アジア地域におけるTPP11協定の意義と日本・中國のFTA戦略」『일본근대학연구』61, pp.341-358
- 임천석(2003)「일본의 수입구조 변화와 한국의 대일수출 한일 FTA와 관련하여」『한일경상논집』25, pp.157-179
- 최석신·임영언(2009)「한일 FTA의 딜레마와 대응전략」『디아스포라연구』3(1), pp.145-170
- 경향신문기사(2019.7.6.) “Q&A로 풀어보는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아예 수입을 못하는 건가요?”
(<https://news.v.daum.net/v/20190706060104606>)
- 연합뉴스 기사(2019.7.11.) “日 정부 “수출규제, WTO 위반 아냐…안보 이유” 주장 반박”
(<https://www.yna.co.kr/view/AKR20190711088300073>)
- 한국무역협회 보도자료(2019.7.2.)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관련 통계”
- YTN기사(2019.7.4.) “NSC상임위 “日 수출규제는 보복적 성격…명백한 국제법 위반”
(<https://www.yna.co.kr/view/AKR20190704147353001>)
- 石川幸一(2012)「TPPと東アジアの地域統合のダイナミズム」『国際貿易と投資』, pp.74-89
- 經濟産業省(2018)「TPP11について」
- 經濟産業省(2018)「日EU・EPA, TPP11の概要と海外展開支援について」
- 經濟産業省(2019.7.1.)「大韓民国向け輸出管理の運用の見直しについて」
(<https://www.meti.go.jp/press/2019/07/20190701006/20190701006.html>)
- 經濟産業省(2019.8.2.)「輸出貿易管理令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の概要」
- 經濟産業省(2019.8.2.)「輸出貿易管理令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が閣議決定 政令案・理由」
(<https://www.meti.go.jp/press/2019/08/20190802001/20190802001.html>)
- 經濟産業省(2019.8.2.)「輸出貿易管理令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が閣議決定されました」
(<https://www.meti.go.jp/press/2019/08/20190802001/20190802001.html>)

12) 송정현(2016)「이코노믹 가드닝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미국 및 일본 오사카부(大阪府)를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동북아경제연구』22(2), pp.22-25

内閣官房 TPP政府対策本部

(<http://www.cas.go.jp/jp/tpp/tpp11/index.html>)

TPP等総合対策本部「総合的なTPP等関連政策大綱」

TPP等総合対策本部「日EU・EPA等の経済効果分析」

JETRO(2017)「TPP11解説書」

日本経済新聞(2019.6.21) G20サミットと世界経済(中) 国際化・技術革新の影響 注視

(<https://www.nikkei.com/article/DGXXZO46357850Q9A620C1KE8000/>)

논문투고일 : 2019년 10월 05일

심사개시일 : 2019년 10월 15일

1차 수정일 : 2019년 11월 06일

2차 수정일 : 2019년 11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9년 11월 18일

<要旨>

한일 무역마찰에 관한 한국의 대안 모색

-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와 CPTPP 간 양면성 분석을 중심으로 -

송정현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일본의 한국 반도체소재 수출규제에 이어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한일 정치는 물론 경제협력·무역통상 관계에 큰 파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일방적인 경제적 수출규제 조치는 향후 한국경제의 침체는 물론 세계자유무역의 기본이념조차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주도하려고 하는 CPTPP에서의 일본정부와, 국가 및 국제적 안보를 문제삼아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를 배제하는 일본정부 간의 양면성에 관하여 고찰한 이후, 한국 측면에서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일본정부는 한국 수출규제의 가장 큰 이유로 국제평화와 안보를 거론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 안보 위협을 근거로 한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는 화이트리스트 배제의 근거에서도 동일하게 주장되고 있다. 반면 CPTPP에서는 국가 간 분업과 자유무역에 근거한 역내무역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한국 수출규제의 내용 및 배경과 모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향후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네 가지 대응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 번째, 한국에의 수출규제와 CPTPP 간 모순성에 근거한 국제적 외교카드의 활용이다. 두 번째, 반도체소재를 포함한 제조업 공급망의 국산화비용을 늘리는 방안이다. 세 번째, 원천기술 연구개발을 포함한 R&D의 적극적이고 중장기적인 시행이다. 마지막으로, 무역통상 협력체제의 다각화 추진이다.

Finding alternatives to Korea-Japan trade friction:

- Focusing on the bilateral analysis between Japan's export regulations and CPTPP -

Song, Jung-Hyun

In July 2019, following Japan's export regulations for semiconductor materials in Korea, the exclusion of Korea's white list has a significant impact on economic and trade relations. Such unilateral economic export control measures may shake up not only the slowdown of the Korean economy, but also even the basic principles of world free trade. Above these stories, this study find out the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the Japanese government in the CPTPP, which seeks to lead a multilateral free trade agreement, and the Japanese government, which excludes export regulations and whitelists, on the issue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security. After that, this study seeks alternatives plan from the Korean side.

The Japanese government talks about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s the main reason for Korea's export control. In addition, Japan's export restrictions based on international security threats have been argued the same on the basis of whitelist exclusion. On the other hand, the CPTPP emphasizes the activation of regional trade based on division of labor and free trade.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se contents are in conflict with the contents and background of Korean export regulations.

Korea will have to come up with various countermeasures in the future to overcome the damage caused by Japanese export restrictions. This study suggests four countermeasures. First is the use of international diplomatic cards based on the contradiction between export restrictions to Korea and CPTPP. Second, we plan to increase the localization rate of the manufacturing supply chain, including semiconductor materials. Third, active and mid- and long-term implementation of R & D, including original technology R&D. Finally, the trade and trade cooperation system should be diversified.